

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

2026. 4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I. 추진 배경

- **(배경)** 금융위·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바젤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본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
 - 이는 은행권의 자금흐름을 가계·주담대 등 부동산 부문에서 첨단·미래성장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,
 -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본부담은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본부담은 경감하여 은행권의 자금공급 유인체계*를 재설계
- * 부동산 관련 위험가중치(RW) ↑ + 기업 관련 RW ↓ → 은행이 동일한 자본으로 부동산 부문보다는 실물 부문(기업)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에 집중토록 유도

$$\text{자본비율(BIS비율)} = \frac{\text{자기자본}}{\text{위험가중자산(신용리스크+시장리스크+운영리스크)}} \times 100$$

- **(방향)** 바젤 기준·해외사례와 국내 규정을 비교하여 그간 보수적으로 운영되었던 주식 RW 관련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,
 - 주담대 RW 하한(下限)을 상향하는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본 부담을 높임으로써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여력을 확보

➔ 은행권이 자본의 질(質)은 유지하면서 '자금중개 기능'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금융 유인체계를 재설계

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

구분	과제명	주요 내용	시행시기
완료 (4개)	① 주담대 RW 상향 ^{신용}	■ 내부등급법 주담대 RW 하한 상향(15%→20%)	'26.1월
	② 주식 RW 하향 ^{신용}	■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	'26.3월
	③ 정책목적 펀드 RW 특례 ^{신용}	■ 정책목적 펀드는 RW 100% 적용	'26.3월
	④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^{시장}	■ 해외점포 출자금 시장리스크 제외	'25.2월
신규 (3개)	①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^{운영}	■ 3년 이상 인식 손실사건 배제	'26.4월
	②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확대 ^{시장}	■ 해외 비연결 자회사 지분투자 등까지 확대	'26.4월
	③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처리기간 단축 ^{신용}	■ 신용평가모형 재개발시	연중

II. 그간의 경과

1 조치 완료 과제

□ (경과) 4개의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를 완료

① 비상장 주식 적용 RW를 원칙400%, 예외250%에서 원칙250%, 예외400%*로 변경하여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자본부담을 완화('26.3월)

* 보유 3년 미만의 단기매매(short-term resale) 목적 또는 업력 5년 미만 비상장 기업의 주식 익스포저는 400% 적용 (그 외는 모두 250%)

② 정책 목적 주식·펀드는 RW를 100%*로 적용(특례)하여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 등에 대한 은행의 출자 부담을 완화('26.3월 법령해석)

* ① 정부가 법률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사업
② 사업분야는 별도의 제한 없이 특정 산업·기업·시장 등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인정
③ 정부(지자체·RW 0% 적용 공공기관 등 포함)가 직접투자, 손실보전 등의 방법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수준(동순위20%, 후순위7.4%, 합산비율20%) 이상을 지원

③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시 적용하는 내부등급법 RW 하한을 15%에서 20%로 상향하여 부동산금융 자본부담을 강화('26.1월)

④ 은행권 해외점포 출자금에 대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*으로 승인하고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('25.2-'26.2월)

* ①비거래(structural) 목적, ②환율변동에 따른 자본비율의 불리한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오픈하는 포지션 → 금감원장 승인하에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 허용

□ (기대효과) 개선조치 완료 과제(4개)로 인하여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(CET1) 비율은 최대 +23.2bp까지 상승

○ 위험가중자산 절감에 따른 확보된 자금여력 전액을 기업대출로 전환할 경우, 최대 80.7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가능

* 정책 목적 RW 100% 적용 특례는 대부분 기존 위험가중자산(RWA) 감소가 아닌 신규 투자분이므로 RWA 감소분을 기업대출로 환산하지 않음

2 신규 과제

1 (운영리스크* 손실인식 합리화)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운영리스크 산출시 배제

* 최근 LTV담합 ELS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금융사고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(보상금, 과징금 등) 규모가 증가하였으며, 자본비율 산출시 10년간 반영되므로 상당한 자본부담으로 작용

- 다만,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, 충분한 보상, 법률쟁송 종료 등 잔여 법률리스크 해소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(4월~)

< 심사 기준 >

- ◆ 재발방지 대책이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된 경우 손실배제 신청
 - (원칙) 內 내부통제개선 및 外 당국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 국내 손실사건으로 限定
 - (정량) 은행 연평균 손실금액의 5% 이상 + 최소 3년 이상 운영리스크 인식
 - (정성) ① 해당사업 전면 폐지(당국의 제도개선에 따른 상품판매중단 인정) 또는 ② 완결성·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·운영 입증*
 - * ① 손실사건 평가의 충실성 : 사건경과, 원인식별 및 제도 미비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
 - ② 대책의 구체성·완결성 : 이사회·경영진 R&R, 책무구조도 개선, 내규·시스템 강화, 교육·홍보 등
 - ③ 대책의 실효성 : 유사사례 비교 등을 통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을 입증

2 (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) 해외사례*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(4월~)

* 유럽, 영국, 미국, 홍콩, 호주 등 해외 감독당국은 비거래적 성격인 해외투자에 대하여 자본비율의 불리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폭넓게 인정

< 심사 기준 >

- ◆ 지분투자는 단기 자본이득이 아닌 해외진출 목적인 경우 인정(전액 한도)
- ◆ 이익잉여금은 배당, 회수가 제한되어 계속 재투자되는 경우 인정 (이익잉여금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도 부여)

3 (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) 은행이 신용위험 변별력이 저하된 신용평가모형 재개발시 신속하게 승인하여 기업 신용공급을 활성화(수시)

- 은행이 개선된 모형을 사용하면 자본비율 제고* 및 기업심사 역량 강화 등으로 실물부문 자금지원 여력이 확대

* (CET1 비율변동(예시)) [A지주] 기업모형 재개발 +0.10%p ↑

- **(기대효과)** 은행(지주)의 자본여력이 커지고, 최근 환율 변동성에 따른 RWA 관리 부담도 상당폭 감소할 전망
 - CET1 비율은 은행지주별로 운영리스크 승인 시 최대 +26bp, 시장리스크 승인 시 최대 +12bp 상승 추정*(5대은행지주 기준)
 - * 은행별 승인 심사 결과에 따라 자본비율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음
 - 이를 기업대출로 환산 시 최대 74.5조원*^{잠정} 규모에 달할 전망
 - * 은행지주의 경우 지주 전체의 자금공급 여력 기준

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효과(추정)

주요 내용	5대 은행지주별 CET1 비율 영향도
①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¹⁾	최대 +26bp
②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	최대 +12bp
③ 내부등급법상 신용평가모형 승인 ²⁾	-
합 계	_3)

1) 정량요건 충족하는 모든 손실사건 고려시(잠정), 2) 최근 사례 고려 시 변경승인 경우 +10bp 상승
 3) 주담대, 주식·펀드 RW 과제와 달리 은행·은행지주별 승인사항으로 전체 합산 불가

Ⅲ. 향후 계획

- 해외 장기 지분투자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에 대한 시장리스크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(“26.4월~)
 - *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관리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
-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승인신청서 접수(“26.4월) 및 승인
 - 승인 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, 필요한 경우 업계 이해도 제고를 위해 FAQ 등도 배포
- 은행의 손실흡수능력,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시기를 검토해나갈 계획
-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관련 추가 개선과제 검토
 -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적의 규제조합(policy-mix)을 모색
- 아울러, 은행권(지주)이 자본규제 개선 등으로 늘어난 자금공급 여력을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공급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,
 - 은행권과 협의하여 은행(지주)의 자본여력 제고 등을 위한 추가개선 과제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

가. 승인 근거

□ 바젤기준·세칙上 일정요건*을 모두 충족한 손실사건은 ‘금감원장의 승인’을 받아 운영리스크 산출시 배제 가능

- * ①순손실금액이 연평균 운영리스크 순손실금액의 5% 이상 & ②3년 이상 인식 & ③재발방지 대책 수립·이행
- 다만, 손실배제 승인은 자주 발생하여서는 안되며(rare), 엄격한 판단(strong justification)이 필요

나. 승인 기준

□ (심사기준) 정량요건은 바젤기준 및 세칙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, 정성요건은 법적 실질·재발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감안

- [정량] ①해당사건의 순손실금액이 은행 연평균 운영리스크 순손실금액의 5% 이상 및 ②최소 3년 이상 운영리스크 산출시 반영
- [정성요건] 손실배제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①‘사업부 폐지’ 또는 ②‘재발방지 대책 마련’으로 구분하여 심사

① 사업 폐지 : 해당사업 전면폐지*(100%) 外 당국의 제도개선에 따른 상품판매 중단도 인정

* 사업단위 구분은 바젤II 영업영역 소분류(예: 투자·소매·기업 금융, 일임/비일임 펀드 관리 등)를 기준으로 하되, 손실사건 발생원인을 상품 등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 (※은행 입증, 감독당국 판단)

② 재발방지 대책 : 은행(지주)가 자체평가한 손실사건 원인 식별, 원인별 재발방지대책 수립, 대책의 실효성 입증 결과 심사

③ ‘잔여’ 법률리스크 : 법률쟁송 중단* 및 충분한 수준**의 보상·배상금 등 지급 시 잔여 법률리스크 해소 인정

* (예) 과징금 납부後 소송절차 종료, 소송절차 종료前 충분한 총당금 적립 등

** 지속적인 노력에도 보상이 불가함(연락두절 등)을 입증 시 100% 배상이 아니어도 가능

□ (공사·보고·페널티) 은행(지주)은 승인 직후 승인결과를 공시하고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매년 감독당국에 관리현황 보고*

* 승인시점 이후의 손실사건 발생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운영현황 등

○ 승인 이후 유사 손실사건이 재발되거나 사업 재개시에는 자본 규제상 페널티* 부여

* 배제 승인 받은 손실사건을 재발시점부터 잔여기간(10년-既定식기간)만큼 손실 요소 산출에 즉시 반영 & 일정기간 손실요소 배제 신청 불가

다. 승인 절차

□ 손실사건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은행 사건은 은행과 지주 각각*, 은행외 지주 자회사 사건은 지주가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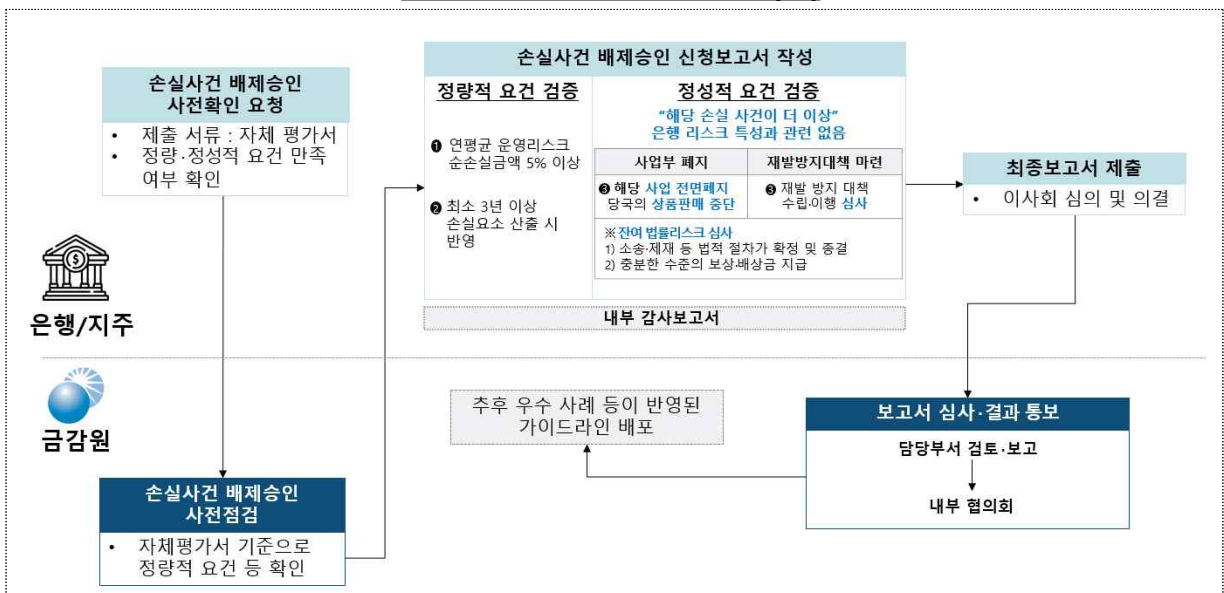
* 은행과 지주 손실사건 배제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지주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, 은행 이사회와 별도로 지주 이사회 의결 필요

○ [금융회사]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자체평가서 작성 후 이사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승인신청서 및 내부 감사보고서* 제출

* 내부감사가 손실사건 배제 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

○ [금감원]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자체 검토 후 내부협의회 등을 거쳐 감독원장이 결정

손실사건 배제 승인 절차(안)



□ 바젤기준은 외화자산이 구조적 외환포지션*인 경우,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 허용

* ①비거래 목적(단기 매매용 X)이며, ②환율변동에 따른 자본비율의 비우호적 변동성#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픈(헤지 X)하는 포지션인 경우

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의 변동이 반대로 움직임(환율↑·자본비율↓/환율↓·자본비율↑)

① (해외 지분투자) 회계적 성격, 해외 사례 등 고려시 해외 진출 목적 지분투자인 경우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

- 단기 재무적 투자가 아닌 해외진출 목적으로 해외금융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기 지분투자인 경우 비거래성 인정 가능

* 바젤 규정.세칙은 "외국통화로 표시된 비연결 관계회사 투자분"을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, 유럽, 홍콩, 호주 등 해외 감독당국도 전략적 제휴.경영권 참여 목적 해외 지분투자를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

- 국가별 외환 및 금융 규제 등 지분 매각의 행정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지분투자 전체를 최대 한도로 설정

② (이익잉여금) 해외점포 자본금으로 계상되고 배당·회수 등이 제한되어 현지사업 등에 재투자되는 경우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

* 이익잉여금은 해외영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자본 계정에 누적되므로 바젤 규정상 "해외통화로 표시된 연결 자회사 또는 지점에 대한 투자"에 해당

- 배당·회수가 지속되는 경우 단기 수익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, 배당 및 모은행으로의 송금 등이 제한되는 경우로 한정하고

- 이익잉여금은 당기손익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므로 자본비율 안정성을 위해 인정 규모를 제한*

* 예) min(해당 점포 이익잉여금의 일정수준, 과거 3년간 이익잉여금) 등

- **(현황)** 내부등급법* 적용 은행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위험가중치 (RW) 대신 자체 손실경험(부도율,손실률 등)을 반영하여 추정한 RW 적용
 - * (표준방법) 감독당국이 정하는 RW 적용 (내부등급법) 은행 자체 RW 산정
 - 내부등급법 적용 시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자본을 효율적*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,
 - * 통상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가 표준방법보다 낮음 (자본비율 상승)
 - 신용등급, 부도율, 손실률 산출·검증 기준 등 바젤 최소요건* 충족에 대한 감독당국 승인(변경 승인 포함)이 필요
 - * 신용평가모형·부도율·손실률 산출 방법(데이터 기간, 부도정의 등), 검증기준 (변별력, 안정성 등), 내부통제 절차(경영진 보고, 검사부서의 검증 등) 등
 - 다만, 변경 승인 시 정밀한 데이터 검증 절차 등 검토사항이 방대하여 최종승인까지 장기화되는 경향

- **(개선방안)** 유사 사례 일괄심사, 중점사항 위주 점검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 변경승인을 신속하게 처리
 - 최근 신용평가모형 노후화, 금융·영업환경 변화 반영 등을 위해 은행권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,
 - 신용평가모형은 기업여신 업무의 핵심으로 신용평가모형 개선 시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능력 제고를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지원 가능
 - * 최근 금융환경 반영, 부도 변별력 제고 시 자본비율 상승 가능성이 높은 측면도 고려